



5.29일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 5.29일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 5.29일이 만기인 대출은 연체이자 부담없이 5.30일에 상환하시거나, 고객이 원하실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조기에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 5.29일 당일 부동산매매,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고객은 미리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를 상향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1

개요

5.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일 증권시장·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당일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금융회사별로 복무규정·협약 등에 따라 차이)되어

→ 금융소비자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유의사항 등을 알려드립니다.

2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 대출금 만기가 5.29일인 경우 】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금의 만기가 5.29일 도래하는 경우 다른 공휴일(예: 어린이날, 추석)과 마찬가지로 5.30일로 연체 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됩니다.

또한,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사전에 상환이 가능합니다.

※ 사인간 거래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민법 제161조) 됩니다.

【 예금 만기가 5.29일인 경우 】

금융회사 예금의 만기가 5.29일인 경우 만기가 5.30일로 자동연장(이 경우 5.29일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됩니다.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5.26일(前영업일)에 예금인출이 가능합니다.

【 5.29일 전후 펀드 환매대금 인출 계획이 있는 경우 】

5.29일 전후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5.23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여야만 5.26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결제대금일이 5.29일인 경우 】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5.29일인 경우 해당 이용대금은 5.30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됩니다.

*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습니다.

【 5.29일 전후 보험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5.29일 전후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보험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 일정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예) 실손보험은 통상 약관상 보험금 청구후 3영업일 이내 지급되도록 되어 있어 고객이 5.26일 신청시 보험사와 협의하여 6.1일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 5.29일 당일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경우 】

5.29일 당일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합니다.

- * 인터넷뱅킹 최대 이체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차이가 있어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5.29일 당일에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 대출, 외환거래 등 거액 자금거래가 예정 되어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각 영업점에서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3

향후 계획

각 금융회사별로 고객불편 최소화를 위한 자체 대책 마련·시행(각 금융협회별로 회원사에 협조공문 및 고객 대응요령 등 송부) 할 예정입니다

- * 예)
 - ① 금융회사별 안내게시판, 입간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5.29일 휴무 여부 및 유의사항 등 적극 안내
 - ② 콜센터, 민원실 담당인력에 대해 관련 사항 사전 교육
 - ③ 5.29일 주택담보대출, 외환거래, B2B거래 등이 예정되어 있어 불편이 예상되는 주요고객에 대해 개별 사전통지·안내 등

대체공휴일에 따른 고객 유의사항이 원활히 전파될 수 있도록 경제 5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은행연합회) 예정입니다.

- * 예) 5.29일이 부동산 거래일인 고객들에게 공인중개사가 사전에 금융회사 휴무 사실, 거래대금 사전준비 필요성 등 대응요령을 개별 전파할 수 있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 협조 요청

신·기보,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공기관도 5.29일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불편이 예상되는 고객들에게 개별 사전통지·안내할 예정입니다.

- ※ 문의사항이 있거나, 5.29일 당일 금융거래가 예정되어 있는 고객은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에 반드시 문의해주시고,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금감원 통합민원콜센터(☎1332)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5.29 일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지?

5.29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대출(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등) 및 주식 신용거래금액은 만기가 5.30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5.30일에 상환하더라도 연체 없이 정상 상환으로 처리됩니다.

만기가 공휴일인 경우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금융회사에 확인을 거쳐 조기상환도 가능합니다.

2. 5.29일이 이자납입일인 고객은 29일날 이자를 갚지 않으면 연체로 처리되는 것인지?

5.29일인 이자납입일이 5.30일로 자동 연장되므로, 30일에 이자를 납입하더라도 정상 납부로 처리됩니다.

3. 5.29일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언제 찾을 수 있는지?

5.29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5.30일에 5.29일 이자분까지 포함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에 따라서는 예금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 前영업일(5.26일)에도 찾을 수 있습니다.

4. 5.29일 카드 결제대금 납부의 경우 언제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카드 결제대금은 대금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로 납부일이 연기되므로, 5.29일이 납부일인 경우 5.30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거나 고객이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고객이 원하는 경우 5.26일에 결제대금 등에 대한 先결제도 가능(5.26일 까지의 이자분만 부담)합니다.

5. 5.29일 당일 자동납부 내역은 언제 출금되는지?

5.29일 출금예정인 자동납부 내역은 다음 영업일인 5.30일에 출금이 가능합니다.

* 자동납부 : 요금청구기관이 물품·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용 요금을 고객이 지정한 계좌에서 출금(예: 보험료, 휴대폰 요금)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습니다.

6. 5.29일 당일 어음, 수표, 전자결제수단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언제 현금화할 수 있는지? 발행 등 거래는 가능한지?

5.29일 만기도래하는 어음·수표·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는 다음 영업일인 5.30일에 가능합니다.

5.29일에 당사자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배서는 가능하나,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 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7. 5.29일 당일 부동산거래, 법인간 대규모 자금결제 또는 외화 송금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동산거래 또는 법인간 대규모 자금결제 등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고객들의 경우 거래상대방과 사전협의를 통해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미리 자금을 확보하거나 인터넷 뱅킹의 이체한도를 상향시켜야 합니다.

5.29일에는 영업점을 통한 환전·송금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외화송금·거래 역시 미리 송금(거래)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5.29일 당일에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 대출, 외환거래 등 거액 자금거래가 예정되어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각 영업점에서 최대한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8. 5.29일 전후 퇴직연금 수령을 희망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5.29일 전후 퇴직연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운용상품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 퇴직급여법령 상 퇴직급여 지급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편입한 개별 상품의 약관 등에 따라 환매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이(예 : 해외 주식형펀드는 영업일 기준 약 8~9일 소요)하므로 사전에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9. ATM, 인터넷 뱅킹, 폰뱅킹의 한도는 얼마이며,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

자동화기기(CD/ATM) 인출한도, 인터넷뱅킹·폰뱅킹의 이체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상이합니다.

-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큰 금액의 인출·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이용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인출·이체한도 증액을 위해서는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이 필요합니다.

<참고> 관련규정상 인출 및 이체 한도

구 분	1회 이체한도	1일 이체한도
현금카드	인출한도	100만원
	이체한도	600만원
텔레뱅킹	개인	5,000만원
	법인	1억 원
인터넷뱅킹	개인	1억 원
	법인	10억 원
모바일뱅킹	1억 원	5억 원
메일뱅킹	1,000만원	5,000만원

※ 금융회사별로 한도 금액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금융회사에 한도를 확인

10. 5.29일 또는 그 전후로 보험금 지급을 받으려는 고객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보험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나, 보험약관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하고 보험회사와 지급일정을 사전에 조율시 보험금 수령에 큰 문제가 없을 전망입니다.

※ 예시

- ① 생명보험, 실손의료보험 등은 보험금 청구 후 3영업일 이내 보험금 지급토록 약관 상 규정, 다만 공휴일인 5.29일이 지급기한일 경우 다음 영업일인 5.30일 이내 처리 가능 → 사전 협의시 5.26일 지급도 가능
- ② 자동차보험 등은 지급 보험금을 정한 날부터 7일 이내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관련 큰 지장은 없을 전망

11. 5.29일 펀드 환매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대체공휴일은 펀드 집합투자규약(약관)에서 정한 영업일에서 제외되므로 당일에는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5.29일을 전후하여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펀드 투자자는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투자설명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및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http://dis.kofia.or.kr>)에서 확인 가능

12. 5.29일 상환이 예정된 ELS, DLS 상환금액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5.29일 상환이 예정된 ELS·DLS는 상환금액을 5.30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3. 5.29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 채권 등에 대한 결제대금은 언제 수령하게 되는지?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라 5.29일이 결제대금 지급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인 5.30일로 대금지급이 순연됩니다.

※ 예시

- ① (사례1) 주식매매의 결제기한은 매매일로부터 2영업일이므로, 5.25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5.29일이 아니라 5.30일로 순연되고, 5.26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5.30일이 아니라 5.31일로 순연
- ② (사례2) 장내국채매매의 결제일은 매매일로부터 1영업일이므로, 5.26일 장내국채를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5.29일이 아니라 5.30일로 순연
- ③ (사례3) 채권장외매매의 결제일은 당사자 합의에 따르지만, 5.29일에는 결제 불가능

14. 신기보 보증과 관련하여 5.29일 신규 보증이 필요하거나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신기보는 5.29일 보증거래 예정 고객에 대해 영업점을 통해 사전 통지하여 기업고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① (신규보증) 보증서 발급이 긴급한 기업은 일정을 앞당겨 조기 지원,
그 밖의 기업은 5.30일 이후 보증서 발급이 가능토록 조치
- ② (기한도래) 개별 영업점이 5.29일 보증기한이 도래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 조정 등을 사전 협의
 - 기업과 협의를 통해 5.26일(前 영업일)까지 사전에 처리하거나 5.30일까지 연장이 모두 가능토록 조치 할 계획

15. 5.29일 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지?

5.29일이 휴무일인 관계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은 전영업일(5.26일)에 받거나, 익영업일(5.30일)에 받는 것으로 미리 문의하여 조정해야 합니다.

16. 5.29일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주택연금 지급일이 5.27일 ~ 5.29일 연휴 중에 속한 고객의 경우 5.26일에 월지급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연휴중 목돈 인출이 필요한 고객은 5.25일까지 공사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5.26일 찾으실 수 있습니다.

17. 5.29일 주택연금 예약상담을 신청했는데?

5.29일에 주택연금 상담을 예약한 고객들에게는 주택금융공사 또는 은행에서 전화를 드려 상담일을 변경·예약해 드릴 예정입니다.

- 또한, 고객이 직접 주금공 지사 또는 은행에 전화하여 상담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은행과	책임자	과장	강영수	(02-2100-2950)
		담당자	서기관	서준	(02-2100-2951)
		담당자	주무관	박민솔	(02-2100-2956)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책임자	과장	이수영	(02-2100-2650)
		담당자	사무관	장지원	(02-2100-2654)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책임자	과장	남동우	(02-2100-2860)
		담당자	사무관	안기빈	(02-2100-2865)
	금융위원회 보험과	책임자	과장	신상훈	(02-2100-2960)
		담당자	사무관	고선영	(02-2100-2961)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책임자	과장	오화세	(02-2100-2990)
		담당자	사무관	권나림	(02-2100-2991)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책임자	과장	변제호	(02-2100-2830)
		담당자	서기관	송현지	(02-2100-2831)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	책임자	팀장	김태훈	(02-2100-1690)
		담당자	사무관	이지호	(02-2100-1691)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책임자	과장	고영호	(02-2100-2660)
		담당자	사무관	윤우근	(02-2100-2661)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책임자	과장	김수호	(02-2100-2970)
		담당자	사무관	박석훈	(02-2100-2811)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책임자	국장	이창운	(02-3145-8300)
		담당자	팀장	변재은	(02-3145-8001)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책임자	국장	김준환	(02-3145-8020)
		담당자	팀장	박상만	(02-3145-8021)
	은행연합회	책임자	상무	박창옥	(02-3705-5211)
		담당자	부장	박진우	(02-3705-5247)
	생명보험협회	책임자	상무	김홍중	(02-2262-6628)
		담당자	부장	조성준	(02-2262-6689)
	손해보험협회	책임자	상무	김지훈	(02-3702-8524)
		담당자	부장	권병근	(02-3702-8530)
	금융투자협회	책임자	상무	이상호	(02-2003-9017)
		담당자	부장	임병태	(02-2003-9030)
	여신금융협회	책임자	본부장	조윤서	(02-2011-0740)
		담당자	부장	이효택	(02-2011-0724)
	신협중앙회	책임자	이사	우욱현	(042-720-1005)
		담당자	주임	박시훈	(042-720-1233)
	저축은행중앙회	책임자	수석상무	최병주	(02-397-8602)
		담당자	부장	성용욱	(02-397-8640)
	금융결제원	책임자	상무	차병주	(02-531-1027)
		담당자	팀장	고평기	(02-531-1520)
		담당자	팀장	배기현	(02-531-1540)
		담당자	팀장	이병민	(02-531-1780)
		담당자	팀장	김영진	(02-531-1730)

